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226호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디딤돌·전략형)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전략형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안내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1.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
2.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3.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4.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5.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수출지향형

단, `22년 창업성장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

6.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7.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세부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구분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디딤돌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3. `23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딥테크)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원

□ **(하반기 지원규모) 총** 302억원 내외(하반기 470개 내외)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고 또는 품목지정 (세부과제별 상이 붙임2 확인)
전략형	최대 2년, 3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개)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대상		지원과제 (지원예산)
디딤돌	지역 창업 허브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이력이 없는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평가를 통해 추천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지원대상을 정하여 개별공고 및 접수	250개 (150억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되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운영기관(서울창경센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10개 (6억원)
	여성참여활성화 (W Start-up)		여성기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 ** 과제 참여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과제	50개 (30억원)
	R&D 기획지원 연계		중소기업R&D기획지원 완료 후 2023년 디딤돌 R&D기획지원 연계 대상으로 통보 받은 기업	30개 (18억원)
전략형	실험실 창업기업	딥테크 기술 분야의 기술기반 실험실 창업기업		50개 (38억원)
	글로벌 창업기업	창업초기부터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 운영기관(경기·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40개 (3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독보적인 기술『10대 초격차 분야』을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운영기관(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30개 (23억원)
	원전분야 스타트업	원자력 중점분야의 R&D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 별도 원전분야 통합공고 진행		10개 (7.5억원)

* 디딤돌(지역 창업 허브 연계)는 지역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디딤돌 내역사업 중 서비스R&D, 바이오R&D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5.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붙임2]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미만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결격 예외적용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2차(하반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접수방식
디딤돌	지역 창업 허브 연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붙임2]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여성참여활성화 (W Start-up)	`23년 4월 17일 ~ 5월 2일, 18시 정각 접수마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R&D 기획지원 연계		
전략형	실험실 창업기업	`23년 4월 17일 ~ 5월 2일, 18시 정각 접수마감	
	글로벌 창업기업		[붙임2]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초격차 스타트업	별도 공고('23년 5월 예정)	-
	원전분야 스타트업	별도 공고('23년 4월 예정)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붙임1, 2] **참조**

7.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전략형 실험실 창업기업, 원전분야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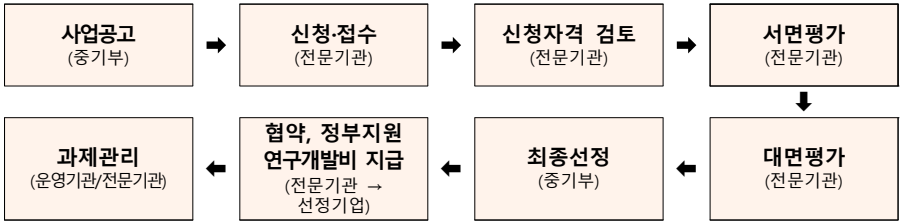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디딤돌 지역창업허브연계, 전략형 글로벌 창업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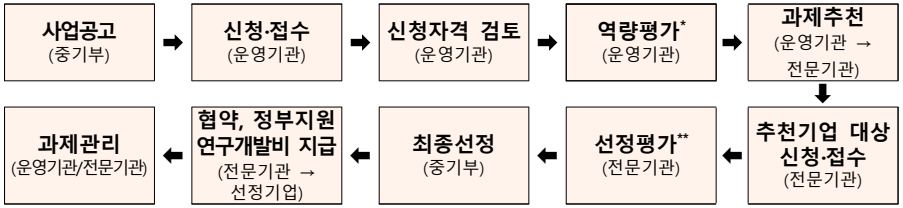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신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디딤돌 R&D 기획지원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 초격차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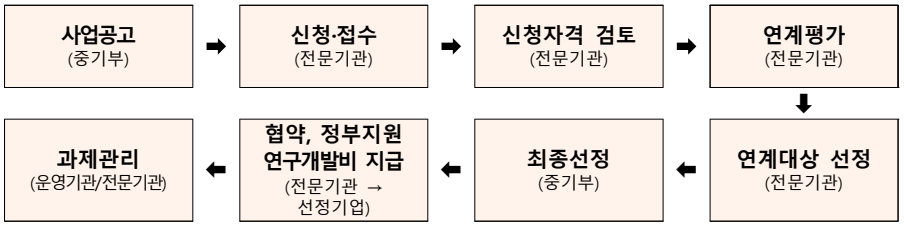

* **연계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및 초격차 스타트업은 과제 적정성 여부 검토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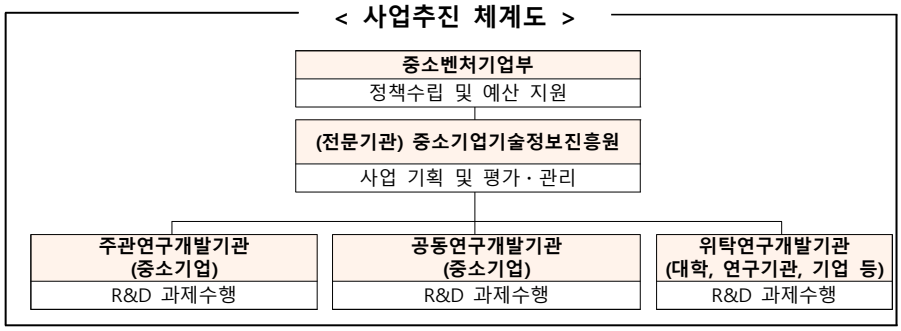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